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현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이송지연 측면)

■ 판례 1

병원이 휴일 당직운영체계의 미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다른병원에 이송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은 병원의 과실이다. 당직운영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적기에 수술가능한 의사를 확보하지 한 잘못과 그 것이 불가능 하다면 적기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 치료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다른병원으로 이송시에 의사나 간호사를 동승 시키지 않은 잘못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병원은 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임이 있다.(서울동부지원 1992.4.29선고 91가합18833판결)

■ 판례 2

구급환자에 대하여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리를 행한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충분한 치료를 할수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1982.4.27.선고81도

2151판결)

■ 판례 3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치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997.8.21 선고 95나27136판결)

■ 판례 4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 판례 5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지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및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3.1.26.선고 92다4871 판결)

■ 판례 6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 기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에 있어서 그것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볼수 없어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판례 7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기재될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의 법률적 판단은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판례 8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판례 9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 이를 하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판례 10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 판례 11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 42846 판결)

■ 판례 12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사례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든지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 42846 판결)

■ 판례 13

차량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서 사인과 무관한 의료상의 실수를 사

인으로 작용한 것같이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비록 불상사가 치료중에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사인과 무관한 경우 의사의 과오 주장은 부당(일본 동경 고등재판소, 1970. 5. 26. 판결).

■ 판례 14

수술하면 좋아진다 하였으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판단은 수술후 취한 처치에 특별한 과오가 없으나 후유증(실명)이 남은 경우 과실이 없다는 의사의 입증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일본 오오사까 지방재판소, 1971. 4. 19. 민사 제7부판결).

■ 판례 15

진료부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에 의한 법률행위로 작성된 문서이다(일본 동경 지방재판소, 1972. 3. 18. 민사 제7부 판결). 환자 사망의 원인이 진찰 소홀에 있다고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제시요구시 응할 이유가 없다.

■ 판례 16

치과의사가 안면의 성형수술을 하였다하여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제2형사부, 1972. 3. 28. 판결).

■ 판례 17

구급환자의 X선진단시 임신초기를 오진한 것은 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Salinetro v. Nystrom, 341 So 2d 1059 Flo, 1977).

■ 판례 18

혈관종의 방사선치료로 혈관종은 치료되었으나 방사선화상으로 인한 반흔을 남긴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일본 오오사까 고등재판소, 1967. 4. 28. 판결).